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3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이달희·김정재·김상훈

서범수 · 유용원 · 김종양

김예지 • 고동진 • 김승수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%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 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.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,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키 사례가 있음이 검토

되었음.

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 중 "표의 세율"을 "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"로 하고, 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

과세표준	세율		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7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4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)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3억9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)		
3천억원 초과	415억9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)		

2. 제1호 외의 경우

과세표준	세율		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		
2억원 초과	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		
200억원 이하	1선000단전 + (4탁전) 소파야근 함액의 100군의 19)		

200억원 초과	37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3천억원 이하	3/ 약0신인전 + (2M약전) 소바이는 급액의 1M)단의 21/
3천억원 초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55조(세율) ①내국법인의 각 사	제55조(세율) ①	
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		
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		
다음 <u>표의 세율</u> 을 적용하여 계	<u>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</u> -	
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		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		
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		
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・상		
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		
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		
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		
한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		
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		
	,	
<u>과세표준</u> <u>세율</u>	<u><삭 제></u>	
<u> 2억원 이하</u> <u> 과세표준의 100분의 9</u>		
1천800만원 + (2억원을		
<u>2억원 초과</u> <u>초과하는 금액의 100분</u>		
의 19)		
<u>37억8천만원+(200억원</u> <u>200억원</u> <u>200억원</u> <u>37억8천만원+(200억원</u>		
 을 초과하는 금액의		
100분의 21)		
3천억원 초과 <u>625억8천만원+(3천억</u>		
3선익전 조과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		

100분의 24)

<신 설>

<신 설>

1.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가 「수도권정 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 른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

<u>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	
<u> 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<u>7</u>	
<u>2억원 초과</u> <u>200억원 이하</u>	1천4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12)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3억9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4)	
3천억원 초과	415억9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7)	

2. 제1호 외의 경우

과세표준	<u>세율</u>		
<u> 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9		
<u>2억원 초과</u> <u>200억원 이하</u>	1천800만원 + (2억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		
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	37억8천만원+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1)		

	3천억원 초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4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